

2015년도 제 3차 임시 이사회

신 애 원

2015년도 제 3차 임시 이사회

■ 통지일자 : 2015년 09월 23일

■ 개최일자 : 2015년 10월 05일 12시 00분

■ 장 소 :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로 20번지
암소마당 (☎ 055-366-9200)

■ 참석대상 : 대표이사 이 , 이사 도 , 이사 신 , 이사 임
이사 김 , 이사 김 , 이사 이 , 이사 최

■ 참석인원 : 대표이사 이 , 이사 도 , 이사 신 ,
이사 임 , 이사 김 , 이사 김

■ 안 건 : 1. 임원 선임의 건

2. 기타안건

< 회의 내용 >

대표이사 이 는 정관규정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2015년도 제 3차 임시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한 후 회의를 진행하시다.

1. 임원 선임의 건

이 대표이사 :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의 이사 김 는 2015년 10월 24일
임기 만료됨을 알리고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그 선임방법
을 물으신바 참석하신 이사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이사 김
는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의 경영상 그 직에 계속 종임
함이 상당하다고 하므로 그 종임을 가결하시다.
(참석이사 전원일치로 가결을 하시다.)

종임된 사람은 즉석에서 그 직에 종임함을 승낙하시다.

성명 : 김

종임 연월일 : 2015년 10월 24일

이 대표이사 :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의 임원(이사 김)종임의 건이 참석
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시다.

2. 기타안건

이 대표이사 : 기타 안건에 대하여 의견은 없는지 물으시다.

신 이사 :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의 운영 여건상 원장 및 직원들이 정상적인
휴무<법정공휴일, 연차휴가, 여름휴가, 월정휴무, 등>를 쉴 수가
없기에 정상적으로 휴무<법정공휴일, 연차휴가, 여름휴가, 월정
휴무, 등>를 쉬지 못하였을 시에는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의 운영
여건이 허락하는 달로 이월하여 휴무<법정공휴일, 연차휴가, 여
름휴가, 월정휴무, 등>를 쉴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의
운영규정을 수정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다.

임 이사 : 신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시다.

김 이사 : 제청하시다.

이 대표이사 :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의 운영규정 수정안건(원장 및 직원들
의 정상적인 휴무<법정공휴일, 연차휴가, 여름휴가, 월정휴
무, 등>를 신애원의 운영 여건상 정상적으로 쉬지 못하였
을 시에는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의 운영 여건이 허락하는

달로 이월하여 정상적인 휴무<법정공휴일, 연차휴가, 여름 휴가, 월정휴무, 등>를 쉴 수 있도록 함)에 대하여 가, 부를 물으시다.

(참석이사 전원일치로 가결을 하시다.)

이 대표이사 :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의 운영규정 수정안건(원장 및 직원들의 정상적인 휴무<법정공휴일, 연차휴가, 여름휴가, 월정휴무, 등>를 신애원의 운영 여건상 정상적으로 쉬지 못하였을 시에는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의 운영 여건이 허락하는 달로 이월하여 정상적인 휴무<법정공휴일, 연차휴가, 여름 휴가, 월정휴무, 등>를 쉴 수 있도록 함)이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시다.

이 대표이사 : 또 다른 의견은 없는지 물으시다.

참석이사 전원 : 다른 의견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다.

이 대표이사 :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번 2015년도 제 3차 임시 이사회 목적인 의안 심의를 종료 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 하시다.

이 대표이사는 참석이사 전원에게 신애원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써 보살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부탁하시니 참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박수로써 결의한 후 전원 회의록에 날인케 하고 2015년 10월 05일 제 3차 임시 이사회를 마치니 시간이 13시 30분이었다.

2015년 10월 05일

대표이사 이



이 사 도



이 사 신



이 사 임



이 사 김



이 사 김

